

의안번호	제593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신산업·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변경(안 제3조)
-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~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”을 “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규제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규제”로, “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② 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다른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, 재난안전실장, 경제통상국장, 과학인재국장, 투자유치국장, 보건복지국장, 바이오식품의약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농정국장, 환경산림국장, 균형건설국장, 행정국장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전임자”를 “전임위원 임기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1호 중 “해당됨”을 “해당함”으로, “가져 온”을 “가져온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대표하며”를 “대표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중 “간사는규제개혁”을 “간사는 규제개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<u>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</u>에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, 경제통상국장, 농정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규제</u>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다른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, 재난안전실장, 경제통상국장, 과학인재국장, 투자유치국</u></p>

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균형
건설국장, 바이오식품의약국장,
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제4조(임기) 위촉 위원 임기는
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
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 위원의
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
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
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
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
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
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
해제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
될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
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
를 가져 온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
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
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부득이
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
를 대행한다.

장, 보건복지국장, 바이오식품
의약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
농정국장, 환경산림국장, 균형
건설국장, 행정국장으로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임기) -----

----- 전임위원 임기
-----.

제4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

-----.

1. ----- 해당
함-----

----- 가져온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----- 대표하고-----
----- <단서 삭제>

<신 설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장이 된다.

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) -----

----- 간사는 규제개혁 ----
-----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위원 구성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

관련법령 발취

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 범위)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(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
2.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
3.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4.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
5. 규제의 시행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
6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
7.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
8.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9. 규제의 존속기한·재검토기한(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
10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
1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·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

12.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